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부배당협회의의 설치·운영 근거 법률 직접 규정〉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931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정부배당협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법률 직접 규정 (안 제65조의6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일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6. 18.

다. 회 부 일 : 2025. 6.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훈령인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서 배당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배당정책에 대한 결정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배당협의체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제 수입 결손을 메우고자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배당협의체의 협의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6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법률 직접 규정 등 (안 제65조의6 신설 등)

현행	개정안
☐ <신설>	☐ 정부배당협의회 ○ 총괄청은 정부배당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정부배당협의회를 둔(안 제65조의6 ①) - 정부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제1호) - 총괄청 소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수준에 관한 사항(제2호) - 제65조의5제2항에 따른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 협의에 관한 사항(제3호) - 그 밖에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과 관련하여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제4호) ☐ 협의회 구성 ○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65조의6 ②) ○ 협의회는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안 제65조의6 ③) -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제1호) -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제2호) - 기업의 배당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서 3명 이상의 사람(제3호) ☐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5조의6 ④,⑤) ○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정부배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65조의6 ④)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함.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65조의6 ⑤)

현	행	개	정	안
				- 회의 일시 및 장소(제1호) -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제2호) - 협의·조정내용 및 결정사항(제3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호)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65조의6 ⑥)

정부배당대상기업이란 국가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부가 현물로 납입받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외)¹⁾으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정부배당대상기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37개사를 지정하고 있음.

[정부배당대상기업 현황]

연번	기업명	연번	기업명
1	한국자산관리공사	20	한국수출입은행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1	한국전력공사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2	한국산업은행
4	대한석탄공사	23	한국조폐공사
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4	한국철도공사
6	한국방송공사	25	한국토지주택공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	26	항만공사
8	서울신문사	27	한국주택금융공사
9	한국부동산원	28	한국해양진흥공사

1) 「국유재산법」 제65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이 절은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출자재산으로서 국가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부가 현물로 납입받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가 받는 배당(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0	중소기업은행	29	새만금개발공사
11	한국가스공사	30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12	한국공항공사	31	주식회사 에스알
13	한국관광공사	32	주택도시보증공사
14	한국광해광업공단	33	88관광개발주식회
15	한국교육방송공사	34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16	한국농어촌공사	35	한국지역난방공사
17	한국도로공사	36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18	한국석유공사	37	한국투자공사
19	한국수자원공사		

자료: 「국유재산법」 시행령

현행 「국유재산법」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이 정부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²⁾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정부배당은 기획재정부 훈령인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이하 ‘「정부배당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배당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정부배당협의체(이하 ‘배당협의체’) 역시 동 훈령에 근거³⁾하여 운용 중임.

- 2) 「국유재산법」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3)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배당협의체 운영) ① 총괄청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배당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배당협의체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재정관리관, 예산실장, 차관보와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중앙관서의 소속 고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의장은 제2차관, 간사는 국고국장으로 한다.

「정부배당절차」

배당기초자료 제출(1월) → 배당협의체 운영(2월) → 배당 확정(3~4월) → 수납(4~5월) → 배당실적 국회 보고 및 공표(5월)

다만, 배당협의체는 실질적으로 정부 배당정책 및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수준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⁴⁾함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있고 배당협의체의 회의 사항 또한 공개되지 않아 배당내역에 대한 국회 등의 실질적 심의가 어려운 상황임⁵⁾.

개정안은 「정부배당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협의체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회의록 작성과 그 내용의 공개를 규정함으로써, 배당결정 과정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 배당업무에 대한 국회 등의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③ 배당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정부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2. 총괄청 소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수준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법」 제65조의5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소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 협의에 관한 사항

④ 배당협의체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정부배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4)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배당결정 결과 통보) 총괄청은 제4조에 따라 배당협의체에서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수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 5)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6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이 완료된 경우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회의록을 비롯한 주요 협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 배당내역에 대한 심의가 어려운 상황임.

「국유재산법」 제65조의6(국회 보고 등)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이 완료된 때에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배당협의체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할 때 설치 근거를 훈령에서 법으로 상향 규정할 실익이 적고, 회의록이 공개되는 경우 공기업 관련 정부정책 논의과정이나 경영상 정보가 직간접적으로 드러나 행정 비효율이 유발되며 회의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첫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회의의 소집 등을 법령에 명시⁶⁾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

그런데, 배당협의체는 배당정책·배당수준 등 정부배당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기관⁷⁾으로 법령에 설치 근거를 마련함이 타당함에

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 기획재정부 훈령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에 배당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둘째, 개정안은 배당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회의나 개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⁸⁾하고 있고, 배당협의체도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인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⁹⁾, 「수도권정비계획법」¹⁰⁾ 등

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8.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9.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5조(회의) ⑦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의 일시·장소, 안건명 및 회의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에서도 동일한 구조로 회의록 공개 의무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 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공개) ①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서면의결서로 갈음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65조의6(정부배당협의회) ① 총괄청은 정부배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정부배당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u> <u>1. 정부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u> <u>2. 총괄청 소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수준에 관한 사항</u> <u>3. 제65조의5제2항에 따른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 협의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과 관련하여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u> <u>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u> <u>1.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u> <u>2.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u> <u>3. 기업의 배당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서 3명 이상의 사람</u> <u>④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u>

현행	개정안
	해 필요한 경우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정부배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3. 협의·조정내용 및 결정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6(국회 보고 등) (생략)	제65조의7(국회 보고 등) (현행 제65조의6과 같음)
제65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생략)	제65조의8(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현행 제65조의7과 같음)
제65조의8(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 ③ (생략)	제65조의9(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기간 동안 신청자 외에 사용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	④ ----- -----제65조의12제1항----- ----- ----- ----- ----- -----

문 의 처
02)6788-5150

참고 1

2025년 정부배당수입 현황

(단위: 억원, %)

기관명		'25년 배당성향	'25년 정부배당금		
			정부배당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
1	한국토지주택공사	20.00	1,491	331	1,160
2	중소기업은행	34.98	5,053	5,053	
3	한국산업은행	37.80	7,587	6,972	615
4	한국주택금융공사	40.00	593	557	36
5	한국수출입은행	37.80	2,828	2,801	27
6	한국가스공사	16.00	351	302	49
7	한국공항공사				
8	부산항만공사	46.00	265	265	
9	한국자산관리공사	37.51	104	87	17
10	울산항만공사	58.00	163	163	
11	인천항만공사	35.00	272	201	71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	한국조폐공사	53.00	39	39	
14	농수산식품유통공사	40.00	18	18	
15	한국부동산원	45.14	37	37	
16	한국방송공사				
17	한국농어촌공사	25.36	54	54	
18	한국전력공사	16.49	249	249	
19	한국관광공사				
20	한국교육방송공사				
21	방송광고진흥공사				
22	한국수자원공사				
23	한국석유공사				
24	한국광해광업공단				
25	한국철도공사				
26	서울신문사				
27	여수광양항만공사				
28	한국해양진흥공사				
29	새만금개발공사				
30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31	한국도로공사	43.60	340		340
32	인천국제공항공사	46.00	2,210		2,210
33	주택도시보증공사				
34	한국투자공사	90.00	1,138		1,138
35	대한송유관공사	90.00	40		40
36	88관광개발주식회사				
37	한국지역난방공사	21.37	155		155
38	공향철도주식회사				
39	대한석탄공사				
40	주식회사에스알	0	0		0
합 계 / 평 균 (배당실시기관)		39.72	22,987 (21개)	17,126 (15개)	5,860 (14개)

자료: 기획재정부